

소액대리권, 18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키자

-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 발의 내용과 의미

조능래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소액심판법 개정으로 선화 후 '입법 전망' 밝아

지난 3월12일, 국회의원 87명의 발의로 「소액사건 심판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주도록 하는 「법무사법」 및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6년 4월, 17대 국회에도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가 지지부진해지자 협회는 시민단체 등과 연대, 개정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벌였고, 그를 바탕으로 2007년 7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 청원서(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외 124,084명)를 제출했었다.

2007년 6월에도 서울시청 앞, 서초동, 여의도, 각 지방 등지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소송대리 입법자료집』, 발간, 학술토론회와 좌담회, 여론조사(당시 '한길리서치'에 의뢰, 응답자의 76.9%가 찬성), 홍보물 게시 및 차량부착, 언론매체 홍보, 법무사 반상회 참석 홍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국내의 정치상황과 맞물리면서

본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아쉽게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협회는 그간의 운동방향 재점검과 실적 평가 등을 통해 「민사소송법」의 특례법인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으로 입법 방향을 선화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지난 3월12일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법률(안)' 및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현재 개정안의 입법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다. 지난 2008년 10월6일~14일까지 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국민의 79.6%가 찬성 입장을 보여 1차 때보다도 2.7%나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었다. 또, 개정 발의에 있어서도 1차 때의 17명보다 5배나 많은 87명의 국회의원이 동참을 해주었고, 지난 3월18일 제2회 국회 공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유선호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 호의적인 입장의 축사로 청중들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는 등 모든 주변여건이 개정안 통과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소액심판법」 8조 특칙에 '법무사 대리인' 추가

2,000만 원 이하의 영세서민 주변사건은 대부분 경제

1) 발의자 : 신학용, 강창일, 조영택, 박선숙, 김진표, 김유정, 김호석, 김영록, 홍재형, 이상남, 안규백, 박지원, 김재윤, 송영길, 김성곤, 박기춘, 김상희, 우제창, 최구식, 김성수, 김선동, 김용태, 최재성, 백재현, 장세환, 노영민, 김재균, 이강래, 이광재, 최규성, 김성태, 유정복, 백원우, 박영선, 강기정, 조정식, 서갑원, 안민석, 김우남, 이낙연, 최규식, 김부겸, 김희철, 신낙균, 최인기, 최철국, 김충조, 주승용, 전병헌, 조진형, 권경석, 변재일, 박상돈, 최영희, 허천, 김성순, 조전혁, 황영철, 김춘진, 오제세, 박상은, 김동철, 서종표, 문희상, 박병석, 강봉균, 김정권, 노철래, 이상민, 심대평, 김충환, 송민순, 신상진, 김성희, 박주선, 강성중, 김영진, 이미경, 이시종, 최문순, 이경재, 이계진, 유승민, 임해규, 유원일, 차명진, 유상현 의원(이상 87인)

적 사정, 또는 소송물 가액의 소액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액사건 심판법」 제8조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도 당사자의 배우자 등 가족 대리에 관한 것으로 변론 능력의 보완장치가 되지 못하고, 단지 출석의 편의와 소송지연의 방지에만 도움이 될 뿐이다. 이 특칙 조항에 법무사를 추가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지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다.

현재 소액사건이 전체 민사사건의 75.7%이며, 그 중 5.6%만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소송’으로 권리주장 및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진정한 권리가 패소하게 되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원성과 사법 불신이 팽배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영세 당사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변론 능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법무사 소송대리인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없는 시·군법원의 무변론 해소, 지금까지 이어져온 법무사의 소액사건 처리관행의 실질화, 법원의 재판진행 및 신뢰증진에 기여, 수요자에게 사건의 난이도와 재정형편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택권 부여 등 수많은 실증적 논거도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새 협회장, 18대 국회 통과에 사활 걸어야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우리 6천여 회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그간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이 기필코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오는 5월부터는 대한법무사협회장과 부협회장 선거가 지방총회 날짜에 맞춰 각 지방회 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권역별 부협회장 3명이 함께 출마해 4명이 한 조가 되는 새로운 러닝메이트 제도에 따라 이미 3개 후보 팀이 지난 3월31일 등록을 마치고 현재 치열한 선거전을 진행 중이다.

각 팀마다 화려한 공약이 제시되었으나, 그중에서도 각 팀이 반드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공약 중의 공약’이 바로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개정(안)의 국회통과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지난 2009년 1월호 『법무사』지의 「협회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번 선거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주춤거릴 시간도 없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업계가 사느냐, 죽느냐의 사활을 건 중대한 선거이다.

입후보자들은 이를 통감하고 스스로에게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본 후,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길 바란다. 그저 명함이나 돌리고 판공비나 쓰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속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주시라.

지난 일이지만, 필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라는 수많은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나에게 감감한 터널 속에서 우리 업계를 구해낼 수 있는 출중한 능력이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스스로 출마를 접었다.

나 자신이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도 그렇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의 출마를 막아 결과적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입후보자들에게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 공약만 있고 행동은 없는 ‘NATO 협회장’(No Action Talk Only)은 절대로 되지 말아주시라. 몸과 마음의 중무장을 통해 업계를 구해내는 전쟁의 최일선에서 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부디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의 우선 통과를 통해 업계의 숨통을 트여주고, 나아가 성년후견인제도,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 에스 크로우제도 등 새로운 업무영역의 블루오션 개척에 능력을 발휘해 주시라.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업계를 기사회생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진퇴를 거는 협회장의 탄생은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 회원들도 이번 선거만큼은 모든 연줄을 털어버리고 누가 업계를 구해낼 수 있는 인물인지 신중을 기하여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무관심, 좌절, 냉소도 이번만큼은 절대 금물이다. 새로 당선된 협회장을 중심으로 소액대리권 국회통과를 위한 재점화의 시동 대열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자. **법무**